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41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조배숙 · 김대식 · 곽규택
고동진 · 박성훈 · 박충권
박준태 · 강명구 · 박형수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때(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②·③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때(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